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0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8월 29일
-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2014년 10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11월 서울시 NPO지원센터 위탁기간(3회차)이 종료함에 따라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확장하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 기반 운영 필요
- 다양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보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다.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 1)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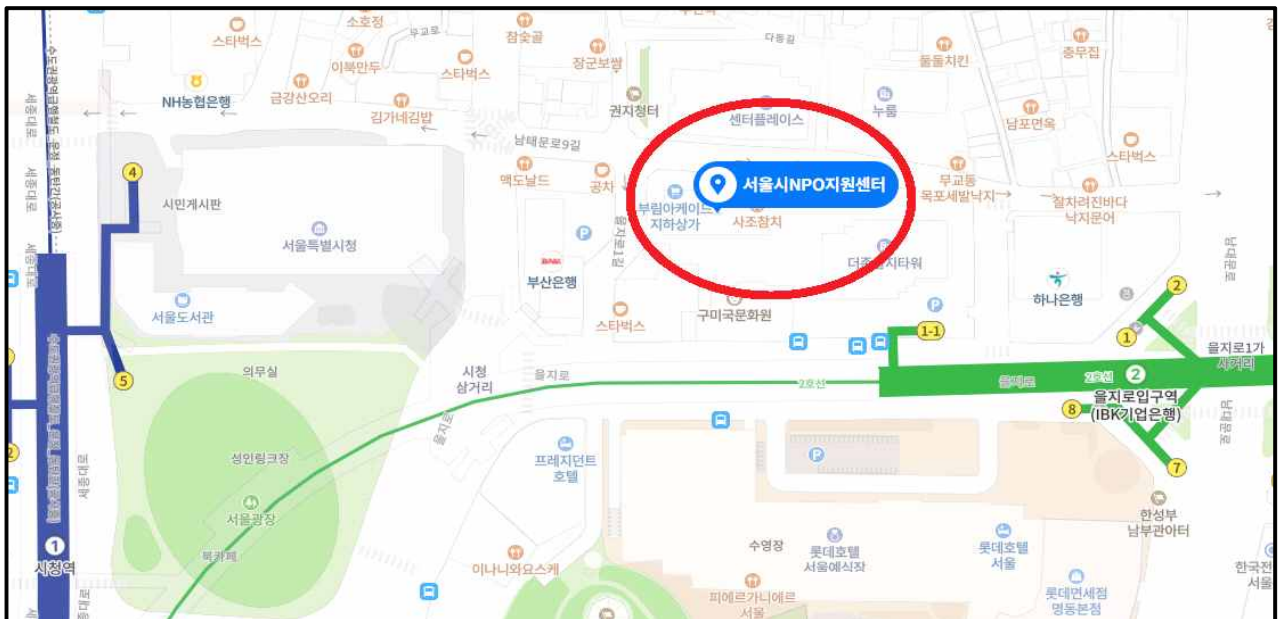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

### 2) 위탁사무 내용

- 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②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③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④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⑤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⑦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⑧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⑨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명 칭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 개관시기 : 2014년 10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시설규모 : 전용 867.4㎡
    - 1층 : 열린 공간(310㎡, 약93평) ⇨ 대강당, 전시공간 등
    - 2층 : 사무 공간(557㎡, 약169평) ⇨ 협업공간, 회의실, 사무실, 교육장 등
- 〈 위치도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11.15. ~ 2025.11.1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민간위탁금 1,555백만원(인건비 823, 운영비 403, 일반관리비 20, 사업비 309)

아. '22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22조(센터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NPO지원센터) 보고서」

## 5. 검토의견

### 가. 동의안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서울시는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 제정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소(2014.10.)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 서울시는 동 센터의 위탁기간(3회차)이 만료(2022.11.14.)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명칭(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행정국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사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 조례의 명칭과 다른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임의명칭으로 변경하여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음.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전)」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동 사업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정택 의원 대표발의)」)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은 회기(제314회 임시회)에 의원 발의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2022.9.28.)되어 10월 17일 시행되었는바, 센터의 명칭과 기능 불일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1)」**

**· 제안이유**

-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조정(안 제13조제1항~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안 제13조제4항)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안 제16조제3항)
-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안 제22조제3항, 제24조)
-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안 제20조, 제21조)
-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 본 동의안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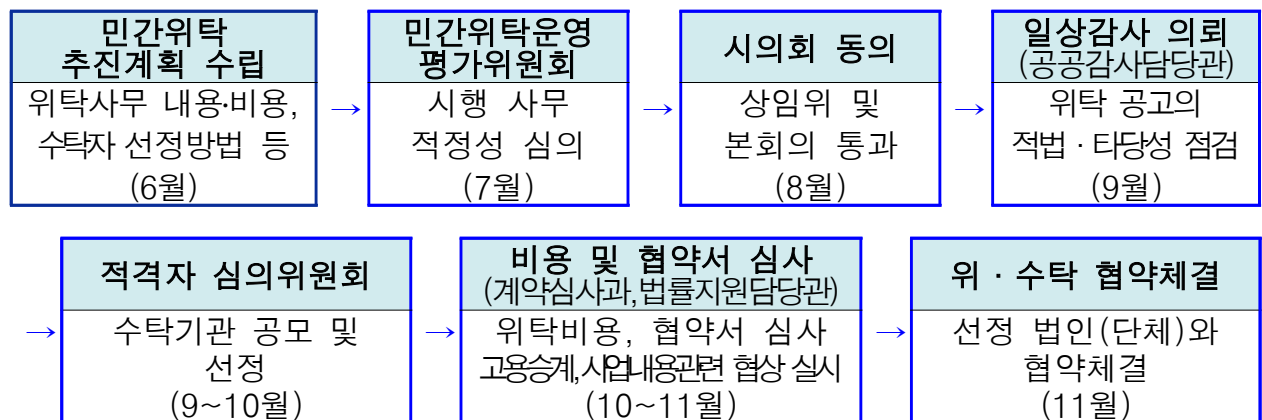
## 〈 민간위탁 개요 〉

- 위탁사업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2.11.15.~2025.11.14.)
- 위탁금액 : 1,555백만원 (2022년 예산)
-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 추진절차



-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사단법인 시민’이 민간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민간위탁 협약 만료 예정(2022.11.14.)에 따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사실상 신규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

**○ 시설현황**

- 위치 :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867.4㎡)
- 건물소유 : 서울시(부림빌딩 12층)  
 ※ '14년 제35지구(하나은행 본점) 사업시행시, 하나은행이 부림빌딩 12층 매입하여 市에 기부채납
- 용도/면적 : 업무시설 / 市 소유 면적 1,816.92㎡(전용면적 867.4㎡)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주요기능 : 시민공익활동 촉진, NPO성장 지원, 공익활동 기반조성 등
- 위탁현황 : ‘사단법인 시민’ (대표 : 양혁승)이 수탁 운영
- 위탁기간 : 2019.11.15. ~ 2022.11.14. (3년)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 예산 및 인력 : 1,555백만원 / 17명 \* 7~8월분 교부금 지급 완료(매 2개월 분 교부)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정원
2022	1,555	823	403	309	20	17명

**○ 추진경위**

- (가칭)서울시민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 수립 : '12.11. 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3. 7.14.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 체결 : '13.11.15.
- 서울시 NPO지원센터 개소 : '14.10. 1.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6.11.15.
-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의결 : '19.6.28.
- 민간위탁 재위탁 협약체결 : '19.11.14.



## 〈 수탁기관(사단법인 시민) 현황 〉

### < (사) 시민 운영 현황 >

- ▶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 법인 설립('13.2.26.) / 서울시 NPO지원센터 수탁('13.11월)

구 분	1회차(3년)	2회차(3년)	3회차(3년)
수탁기간	'13.11.15.~'16.11.14.	'16.11.15.~'19.11.14.	'19.11.15.~'22.11.14.
수탁법인	(사) 시민	(사) 시민	(사) 시민
선정방법	공 모	재계약	재위탁(공모)

### ○ 수탁기관 현황

#### 1. 이사장 : 양혁승(임기 : '20. 3. 28. ~ 현재)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前경실련 정책위원장, 前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 역대 이사장 현황 〉

- 권미혁('13.2.26. ~ '15.10.1.) : 20대 국회의원  
前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정현백('15.10.1. ~ '17.6.12.) : 前 여성가족부장관('17.~'18.), 前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현진('17.7.13. ~ '20.3.27.) : 현 국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前 경실련 공동대표

#### 2. 설립목적 : 시민사회운동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류, 연구사업

#### 3. 주요사업

- 활동가역량강화, 시민펠로우 사업(비영리공익활동가 경험공유, 시상)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등
- 시민사회와 각계와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 4. 법인연혁

연도	주요 내용
'13.2.26.	사단법인 시민 창립
'13.6.13.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3.11.~현재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2016	2기 시민펠로우 현장운동시리즈, 시민 공익자료발간시리즈 발간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수탁 재계약 2016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성과 공유대회
2017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담회/ 민주시민교육포럼 개최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국무총리실)
201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활성화 세미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컨설팅/네트워킹)
2019	NPO연계형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위탁운영(청년재단)
2020	- 법제도 개선활동 : 공시제도, 의사록인증 제도 등 시민사회 관련 법안 설명회·토론회 - 강한시민사회포럼 - 연구활동 :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역할과 민관협력방안 / 시민사회 법제도 현황 점검과 과제 - 역량강화교육 : 공익법인 회계실무, 비영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비대면 역량강화 등 - 연대협력활동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등

##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행정국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역할 중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일반시민 참여 콘텐츠 부족, NPO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 시민의 실질적 공익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운영이 필요하고, 다양한 민간단체와 공익활동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2022.7.) >

#### □ 문제점

- 자음에 기반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공공 예산지원 적정성 비판 지속
  - 지난 10년간 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 NPO 지원, 네트워킹 사업 중심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 확대 목적에 미흡
  - 일반시민 참여 콘텐츠 부족, 시민공감적 사회문제 해결·변화 사례 부족
- NPO지원센터 확장에만 치중, 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 광역·권역 NPO지원센터 모두 NPO 활동 지원, 네트워킹 사업 위주 운영
- 센터에서 민간보조사업 운영, 상호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도적적 해이 발생
  - 민간위탁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수의 공모사업 진행

#### □ 개선방안

#####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선 방향 >

- ◆ 일반시민 참여 확대 위해 센터 명칭 변경[(가칭)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 ◆ 센터 간 업무 중복성 해소 위해 권역별 센터 종료 → 광역-권역 기능 통합
- ◆ 공공예산 지원 최소화,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 다양한 자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 서울시 NPO지원센터 11월 위탁 종료 ⇨ **신규 민간위탁 공모 추진**

- (사)시민이 ' 13.11월 최초 수탁 이후 현재까지 장기 수탁하고 있으며, **사업 독점, 특정 시민단체 특혜 및 관리 부실** 등 논란
-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포괄 재편하여 **(신규)민간위탁 추진**
- 협의적 개념인 'NPO' 라는 용어 대신, 시민 접근성 및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 명칭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로 변경** 추진
- 기존 NPO뿐만 아니라 **제3섹터 내 NGO까지 지원토록 센터 사업 확장**
- ※ 조례 개정시 센터 명칭 변경 및 권역별 센터 근거 조항 삭제, 센터 기능 수정
- 청년·1인 가구·성폭력·주택·교육·사회적 취약계층 등 **市 역점사업 관련 시민공익 활동 단체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센터 역점 사업 변화** 모색
- 신규 법인 위탁시 지원 예산을 타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 및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합리화 도모**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관주도의 직영방식보다 독립적 성향의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역 단위 공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는 81.86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2016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2점으로 재계약 자격 충족하여 3년 재계약
- 2019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5점으로 재위탁 자격 충족하여 3년 재위탁
-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81.86점

평가범주	사업 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시민 만족도	합계
배점	24	15	38	8	15	100
득점	16.02	11.8	33.5	7	13.54	81.86

○ 주요 사업성과

- ('13~'16) NPO조직운영 역량강화, 미트쉐어, 활동가 역량강화, 공간지원 등
- ('16~'19) NPO조직변화 지원, 국제컨퍼런스, 파트너페어, 정책연구 등
- ('19~'21) 조직변화 지원, 공익활동가 성장지원 환경조성,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원연계 및 정보확산 등

○ 다만,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위탁사무내용 수정에 따른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위탁기간 내 추진 가능 여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본 동의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사무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인 'NPO'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 등 일체의 활동 지원 내용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는바, 지난 9년간 센터가 지속해서 운영되어온 만큼 사무 내용의 종료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 등의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탁사무 내용 비교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li> <li>-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li> <li>-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li> <li>- NPO의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li> <li>-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li> <li>-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유재산 및 물품관리</li> <li>-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li> <li>-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li> <li>-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li> <li>-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li> <li>-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li> <li>-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li> <li>- <u>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사업</u></li> <li>-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li> </ul>

- 한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위탁 사무 내용으로 추가된 ‘권역별 시민 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남권NPO 지원센터(2023년 3월 종료 예정)’의 사무내용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현황 >

◆ 광역 센터 1개, 권역별 센터 3개

구 분	광역(1개소)	권역(3개소)		
	서울시NPO지원센터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서남권NPO지원센터
수탁법인	(사) 시민	(사)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사) 커뮤니티허브공감	(사) 구로공익단체협의회
수탁기간	'19.11.15~'22.11.14.	'18.6.15.~'22.6.14.	'20.3.5.~'23.3.4.	'21.3.1.~'24.2.28.
인력(정원)	17명	5명	5명	5명
'22년예산	1,555백만원	297백만원	450백만원	432백만원
종료현황	'22.11월 신규유탁 추진	'22.6월 종료 완료	'23.3월 종료 예정	'22.11월 종료 예정*

※ 서남권 센터는 '24. 2월 종료 예정이나 수탁기관에서 조기 협약해지 협의 요청('22. 3)

< 서울특별시 동남권 NPO지원센터 위탁사무 내용 >

- ①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 ②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 ③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④ 동남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⑤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⑥ 동남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⑦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둘째, 행정국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민간위탁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적시하며 구체적인 기간을 ‘2022.11.15.~2025.11.14.’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 민간위탁 개요 〉

### 3. 주요 내용

#### 마. 민간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2022.11.15. ~ 2025.11.14.)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 → 수탁자 선정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2년 소요예산 : 1,555백만원

○ 현재 체결되어있는 민간위탁(사단법인 시민)협약의 만료일이 2022년 11월 14일 인데 반해, 새로운 위탁계약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sup>2)</sup>에 따라 40일간 입찰공고 후 적격자 심의(10~20일 소요)를 마치고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마치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 시민들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동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에 책임이 있는 행정국의 불성실한 행정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소관 실국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연장협약(2~3개월)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022.7.21.) 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사무 내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위탁 절차를 준수할 것과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을 명시 하고 있으므로, 행정국은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갈등관리 협치과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공모)	시설		3년	적정	- 위탁사무 내용상 주요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지침에 의거 신규위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부시장 전결) 수립 필요 -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조례 개정 시 위탁사무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반영

- 넷째,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고용유지 및 승계, 정규직 비율 등 노동형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의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관련 지침에 따라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 발생
- ▶ '특별한 사정'의 예시
  -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 ▶ 사회동년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인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예: 민간대체인력뱅크,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예: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 ②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③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 '승계범위 조정'의 예시
  - ①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②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③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고용승계 범위\*\*조정 가능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시) : 10명 미만 / \*\*고용승계 비율 조정범위(예시) : 25%~80%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김민정
------	-----	-------	-----

## 성과분석

### □ 운영성과 ('14 ~ '21년)

○ (NPO지원) NPO 단체 조직역량강화스타트업 지원

- 총 412개 NPO 단체 조직변화지원, 조직진단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성장지원, 교류지원 사업 등 2,515명 활동가 지원

○ (네트워킹) NPO 및 공익활동가 네트워킹 구축 사업 추진

- 서울시 NPO지원센터 협력단체 총 451개소 MOU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NPO 지원산업박람회(431개 단체 참여, '17~'21년), NPO 아카이브 운영

<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현황 >

◆ '13년 1개 센터 4억원 교부 → '21년 4개 센터 41억원 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3.1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위탁금	20,623	429	1,028	1,430	1,888	2,371	2,415	2,974	3,990	4,098
인 력	32	8	8	12	14	15	20	21	27	32
비 고		서울NPO신설					동북권 신설		동남권 신설	서남권 신설

### □ 문제점

- 자율에 기반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공공 예산지원 적정성 비판 지속
  - 지난 10년간 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시민체감 가시적 성과 부재
- NPO 지원, 네트워킹 사업 중심 운영으로 일반시민 참여 확대 목적에 미흡
  - 일반시민 참여 콘텐츠 부족, 시민공감적 사회문제 해결변화 사례 부족
- NPO지원센터 확장에만 치중, 센터 간 업무 중복 및 차별성 부족
  - 광역·권역 NPO지원센터 모두 NPO 활동 지원, 네트워킹 사업 위주 운영
- 센터에서 민간보조사업 운영, 상호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도적적 해이 발생
  - 민간위탁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수의 공모사업 진행



## □ 개선방안

### <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선 방향 >

- ◆ 일반시민 참여 확대 위해 **센터 명칭 변경[(가칭)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 ◆ 센터 간 업무 중복성 해소 위해 **권역별 센터 종료 → 광역-권역 기능 통합**
- ◆ **공공예산 지원 최소화**, 자체 사업발굴·경영 개선으로 자생력 강화
- ◆ 다양한 자원(법률노무홍보네트워크)을 연계하여 **시민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회복**

### ○ 서울시 NPO지원센터 11월 위탁 종료 ⇨ **신규 민간위탁 공모 추진**

- (사)시민이 '13.11월 최초 수탁 이후 현재까지 장기 수탁하고 있으며, **사업 독점, 특정 시민단체 특혜 및 관리 부실** 등 논란
- 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업무까지 포괄 재편하여 **(신규)민간위탁 추진**
- 협의적 개념인 'NPO' 라는 용어 대신, 시민 접근성 및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센터 명칭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로 변경(향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기존 NPO뿐만 아니라 **제3섹터 내 NGO까지 지원토록 센터 사업 확장**
  - ※ 조례 개정시 센터 명칭 변경 및 권역별 센터 근거 조항 삭제, 센터 기능 수정
- 청년·1인 가구·성폭력·주택·교육·사회적 취약계층 등 **市 역점사업 관련 시민공익 활동 단체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센터 역점 사업 변화** 모색
- 신규 법인 위탁시 지원 예산을 타 민간위탁 기관과 비교 및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합리화 도모**

## □ **신규위탁 추진계획**

### □ 추진사유

- 시민공익활동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수탁기관 필요**
- 수탁기관 (사단법인 시민) 위탁기간 만료 예정('22.11.14.)으로 **광역과 권역의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있는 신규 수탁기관 선정 필요**
  - ※ 위탁사무의 추진방향 및 사무내용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어 **재위탁(공모)가 아닌 신규 민간위탁으로 추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10.)

## □ 추진방향

- '시민단체' 위주 사업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집중
  - 권역별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총괄 지원
  - 신규 위탁 추진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및 후속절차 이행
    - 권역센터의 순차적 종료에 따르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설(물) 및 사무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인수인계 등 철저
- ※ 권역센터 현황: 동북권(' 22.6 기간만료), 서남권(' 22.10 종료합의), 동남권(' 23.3 기간만료 예정)

### < 광역센터 운영 유지 사유 >

- ▶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 현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및 NPO, NGO 등과의 건전한 협력을 위해 **광역센터 유지 필요**
-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에서 관련 조직 지원 관련 센터 운영 중

##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1~2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
- 위탁사무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 비영리조직(NGO 포함)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탁기간 : 3년(2022.11.15.~2025.11.14.)

○ 위탁금액 : 1,555백만원 (2022년 예산)

○ 선정방법 :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개모집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사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민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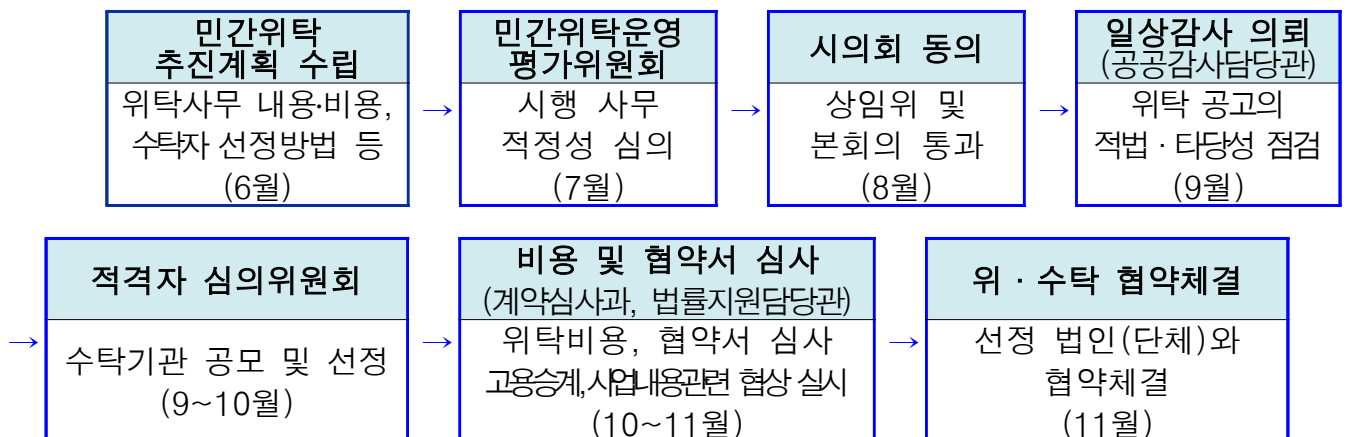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 '19년 재위탁까지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만 참여 가능했으나 타 법인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수행실적 조건 1년으로 축소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수탁 참여 가능(권소사업 구성시 2개 단위 이내로 제한)

○ 추진절차



## □ 주요 항목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0조 및 22조

제11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공공·공익성 여부

- 공익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의 인큐베이팅부터 본격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별 필요한 공간과 교육프로그램, 각종 네트워킹 도구,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이러한 기능 및 역할은 공공보다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영역에서 시설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시민공익활동 초기 단계부터 본격 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공익활동가 및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음

###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그 간 2회의 재위탁시 모두 단독입찰로 진행되어 경쟁원리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영리법인이 지난 10년 간 지속 성장해 온 바, 이번 신규 위탁은 2곳 이상의 법인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함

### ⑥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센터는 공익활동지원을 위한 거점시설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활동가 및 단체 간의 소통 및 교류의 공간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 예정임

### ⑦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그간 일반 행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시설로,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있는 민간기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됨

### ⑧ 경제적 효율성

- 공익활동지원이 상시 이루어지는 특화공간으로 관련분야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⑨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회의장 등 운영일수 및 포럼 등 개최 횟수, 교육 플랫폼 참여 인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상담 참여 인원 등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 ⑩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검토

- 공익활동지원시설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용역으로 추진시 운영경험 부재로 인한 낮은 현장성으로 기계적인 사업 추진 등 시설 특성을 살리지 못한 단순한 사업추진이 우려되어,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공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 방식과는 성격이 다름

#### ○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자치구에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나, 소재지인 “중구”에 시설관리를 위임할 경우 당초 시설 조성목적인 공익활동지원시설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역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공익활동지원 사업의 경험을 갖춘 투자출연기관 및 공단이 전무한 실정이며, 법령 및 조례상 투자출연기관 등에 위임할 근거는 없음

#### ○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서울시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는 성격이 다름

#### ○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 시설로 비영리 조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되어 중복가능성 없음



## 운영 계획

### □ 세부 운영 계획

#### 【 비영리단체 운영 지원 】

##### ○ 조직변화 지원(소요예산: 50,000천원)

- 공익활동 단체의 수요에 기반한 도구 제작(24건: 위기관리, 성과관리, 조직운영, 업무효율, 기록관리 등)과 활용 교육 지원
- 공익활동지원 상담소 운영(월 1회, 설립, 인사, 재무, 모금 등 분야)  
※ 지난 4년 ( '18~' 21) 동안 452개 단체 참여, 94명의 전문가 연계

#####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소요예산: 40,000천원)

- 비영리스타트업 15개팀 공모·선정,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 지원, 조직성장을 위한 사업제안 기회 제공,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 (업무 개선)** 비영리스타트업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조직 컨설팅, 기존 스타트업과 네트워크 등 **자립할 수 있는 역량 축적에 집중**

#### 【 지식 플랫폼 운영 】

##### ○ 활동가 학습플랫폼 '판' 운영(소요예산: 73,000천원)

- 협력기관 추가 발굴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  
(교육프로그램 등록 400회, 콘텐츠 발굴 50회, 공익활동가 정보지식포럼 2회 등)

##### ○ 공익활동 아카이브(소요예산: 47,000천원)

- 공익활동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적 개선('21년말 2,652건 축적), 큐레이터 선발·운영, 트렌드 리포트 제작 등

→ **◇ (사무 추가)** 단체 위주에서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

## 【 대외협력 및 홍보 운영 】

### ○ 정책 및 대외협력(소요예산: 30,000천원)

- 제도개선 이슈별 네트워크 협력 강화, 시민사회 대토론회, 간담회 등 4회, 공익 활동지원성과 빅데이터 조사, 활동가 석사과정 장학추천(등록금 30~40% 면제)

### ○ 홍보포털 운영(소요예산: 54,000천원)

- 공익활동 거점 플랫폼으로서 데이터 기반 홍보채널 운영(뉴스레터 월 2회,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1회, 온라인 홍보채널 상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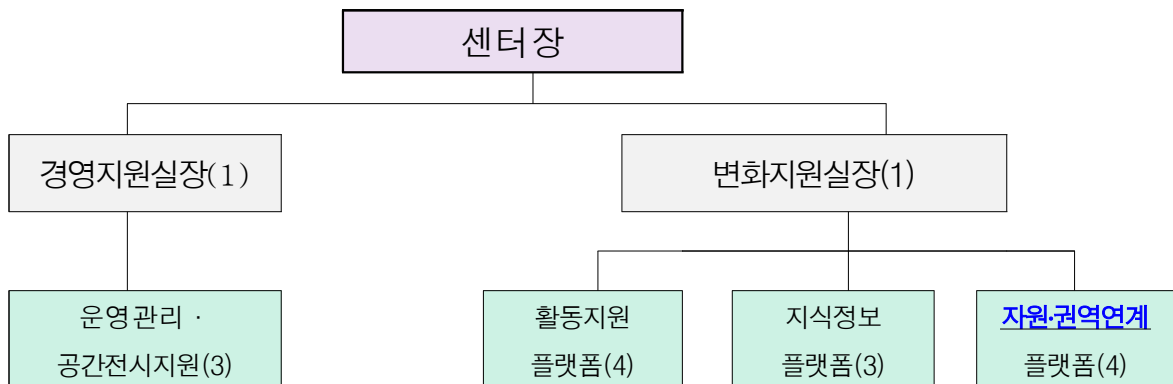
◇ (사무 추가) 권역별 특화 사업 의제 선정 및 실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의제별 실천활동 지원 사업 추가

- ※ 지역의제로 자치구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자치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 마련

## □ 조직 및 인력 운영

### ○ 조직구성 : 1센터장·2실·4팀, 17명(정원)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및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 지침 준용하여 인력관리
- ※ 현 예산 기준에 따른 현황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인력·조직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수탁업체 공모시 평가(정성평가 항목) 반영**



## □ 예산계획

○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1,555,000천원 ※ 2022년 편성예산 기준

○ 예산내역

(단위 : 원)

관	항	내 용	편성액
인건비	기본급 및 제수당	센터 직원 소요 기본급, 수당, 퇴직충당금	823,000,000
운영비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 등	사회보험료, 여비교통비, 공공운영비 등	403,000,000
일반관리비		수탁기관 일반관리비	20,000,000
사업비	조직변화지원	시민공익활동 도구 지원, 공공재 개발, 상담소 운영	50,000,000
	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사업	개선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25,252,000
		시민공익활동 스타트업 쇼케이스 및 홍보	14,748,000
	학습플랫폼 운영	개선 활동가 학습플랫폼 판 운영, 정보지식포럼	73,000,000
	공익활동 아카이브	시민공익활동 아카이브 운영, 각종 리포트 제작	47,000,000
	정책 및 대외협력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공론장 운영	11,560,000
		활동가 지속가능지수포럼	4,300,000
		시민사회 현장조사	8,000,000
		시민사회 정책정보 생산 및 홍보	6,140,000
	홍보포털 운영	개선 홍보채널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	11,290,240
		웹사이트 및 구글애널리틱스 유지보수	13,851,000
		센터 사업설명회	8,525,000
		센터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국/영문)	20,333,760
대관 및 공간운영	대관 운영, 협업공간 등 운영	15,000,000	
계			1,555,000,000

※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권역연계 프로그램 추가 운영 검토

## □ 추진 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신규) 동의 : 2022. 8월
- 일상감사 및 수탁기관 공모·심의 선정 : 2022. 9 ~ 10월
-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0 ~ 11월.



## 참고 2

## 시·도별 NPO센터(10개 시·도 12개 센터)

(2022. 8. 기준)

연번	지역	근거 조례	센터명	위탁연도	수탁법인	인력 (명)	예산 (백만원)
1	서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NPO지원센터	2013	(사)시민	17	1,555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2020	(사)커뮤니티허브공감	5	450
			서울시서남권NPO지원센터	2021	(사)구로공익단체협의회	5	432
2	경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사)경기시민연구소	8	2,100
3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16	(사)부산시민재단	8	684
4	광주	광주광역시 엔지오(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NGO지원센터	2015	(사)광주NGO시민재단	5	576
5	대전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NGO지원센터	2015	(사)공공	4	619
6	대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016	(사)대구시민재단	6	650
7	충북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충북시민사회지원센터	2012	(사)충북시민재단	5	352
8	충남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16	(사)충남시민재단	7	823
9	경남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사)경남공익재단	5	476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직영	3	565